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1803
----------	------

발의년월일 : 2009. 2. 5.
발 의 자 : 문인수의원 외 5인

개정이유

- 기존 의장단회의에서 심사하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 의원 1명이 1개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구단체수를 2개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 또한, 연구 활동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각종 참고자료 구입비 등 연구 활동비를 현실화하여 1개 연구단체에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의장단회의에서 심사하던 연구단체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의원은 3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다.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조)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 연구활동비 : 1개단체 × 300만원 = 300만원
4개단체 × 300만원 = 1,200만원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목“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안산시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2항 중 “2개 이상”을 “3개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 간사는 의회행정위원회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주제)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안산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 등록) ① (생략)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연구단체 등록) ①(현행과 같음) ② ----- 3개 이상의 ----- -----.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생략) ② 연구 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300만원 -----.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한다.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 간사는 의회행정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주제)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매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당해 의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 등록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활동기간) 연구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년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연구활동비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용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

②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연구계획 등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의원,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당해 연도말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부 칙(2008.01.30)

이 규칙은 2008.1.1부터 시행한다.